



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



수신자 2024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
(경유)

제 목 2024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안내

1.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7조(보고 등) 및 『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』에 따라, 인증 사회적기업은 매년 4월말, 10월말까지 사업 실적 및 주요 인증기준 현황을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, 기한 내(~'24.10.31.) 10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어 지연 제출 및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더불어,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9조(정관 등) 및 『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』(정관 등 변경신고)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정관 등 변경신고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고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(24.10월 제출용) 1부.
2.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서식(24.10월 제출용) 1부.
3. 10월 사업보고서 온라인 제출방법 안내자료(기업용) 1부.
4.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안내(지정 신고 포함) 1부.
5.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및 정관 변경 신고 관련 서식 1부. 끝.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



★대리 김예은

센터장 정상철

본부장 전결 09/06
서종식

협 조 자

시 행 사회적가치인증센터-1201 (2024. 9. 9.) 접 수 ()

주 소 (우) (13292)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, 6-8층 / www.socialenterprise.or.kr

전 화 031-697-7725 / 전 송 031-697-7889 / ky2@ikosea.or.kr / 공개